

정책연구자료 98-08, 인쇄부수 1,000부, 인쇄매수 107쪽,

ISBN 89-8187-163-9 93330

행정간행물등록번호 A0045-65253-57-9825

兒童權利 增進을 위한 法·制度的 措置

- 兒童權利協約에 관한 2次 國家報告書
作成을 위한 基礎研究 -

卞俗粲

徐文姬

裴花玉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년 11월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9월 2일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자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동 협약의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동권리의 실행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협약 당사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5년 이내에 동 협약 제44조에 의거 그간의 아동권리의 실천현황 및 개선내용에 대한 제2차 국가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1994년 이후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부와 각계 각층의 노력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법·제도적 노력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 장단기 아동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관계자, 관련 학계,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변용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서문희 책임연구원, 배화옥 주임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과 길호섭 과장, 곽숙영, 이창준 사무관, 한봉근 담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의견을 제공해 주신 보건복지부, 외무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그리고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의 현황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 한국어린이보호회의 이배근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의 배태순 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이재연회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본 연구원의 이상영 부연구원, 효성가톨릭대학교의 정기원 교수, 한국어린이보호회의 이배근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 경 배

목 차

요 약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8
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19
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20
제3장 아동의 정의	24
제4장 일반원칙	27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27
제2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28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29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29
제5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31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31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32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33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34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35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35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36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협약 제37조 제1항)	38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39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제1항, 2항)	39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40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41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42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43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44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46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협약 제19조 및 제39조)	47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49
제7장 기초보장 및 복지	51
제1절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	51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55
제3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57
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제3항)	59
제5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	61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3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63
가. 학교의 종류	64

나. 교육예산	74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76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76
제9장 특별보호조치	80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80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80
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제2항, 3항, 4항)	85
다.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89
라. 사회복지지원(협약 제39조)	90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91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93
나. 마약(협약 제33조)	94
다. 성적 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95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96
참고문헌	98
부록	101

표 목 차

〈표 1〉 아동인구(1980~2000년)	16
〈표 2〉 요보호아동 발생현황(1990~1997년)	43
〈표 3〉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1958~1997년)	45
〈표 4〉 1997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45
〈표 5〉 연도별 영·유아보호시설 및 아동현황(1975~1997년)	49
〈표 6〉 아동복지시설 현황(1996년)	50
〈표 7〉 영유아 예방접종률(1994년)	52
〈표 8〉 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1997년)	53
〈표 9〉 교통사고 사망자(1990~1997년)	53
〈표 10〉 전국 장애아동의 연령별·성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1995년)	55
〈표 11〉 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1995년)	58
〈표 12〉 18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아동수(1997년)	59
〈표 13〉 시설별 보육현황(1990~1997년)	60
〈표 14〉 결연사업 실적(1997년)	62
〈표 15〉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1985~1997년)	62
〈표 16〉 학교 현황(1998년)	63
〈표 17〉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1995~1998년)	64
〈표 18〉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1988~1996년)	65
〈표 19〉 학교급별 진학률(1980~1998년)	67
〈표 20〉 유치원 취원율(1980~1997년)	68
〈표 21〉 특수학교 개황(1994~1997년)	68

<표 22> 특수교육현황(1993, 1998년)	69
<표 23> 사립학교 현황(1997년)	70
<표 24> 실업계고등학교 현황(1998년)	72
<표 25>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추이(1995~1997년)	72
<표 26> 교육예산의 규모(1990~1998년)	75
<표 27>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1990~1997년)	77
<표 28>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황(1992~1996년)	78
<표 29> 이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1991~1997년)	78
<표 30> 전국 문화공간 현황(1997년)	79
<표 31> 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1993~1997년)	89

요 약

1. 아동권리 관련법규의 제·개정

-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사회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이 1993년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대체됨.
- 1998년 10월 문화관광부의 주관으로 기존의 청소년헌장을 ‘새로운 청소년 헌장’으로 개정함. 새로운 청소년헌장은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조항 11개와 ‘청소년의 책임’조항 9개로 구성되어 있음.
-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취업금지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자로 확대시켜 근로상에 있어서 아동보호를 강화하였음.
- 기존의 교육법이 세계화·국제화에 맞는 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되고 구 교육법 제76조의 학교체벌 허용조항이 철폐됨. 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교사에 의한 체벌이 금지되는 등 아동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됨.
- 1997년 12월 개정된 민법은 제781조 제1항 가운데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의 국적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음.
- 1997년 12월 국적법 가운데 제2조 제1항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음. 개정된 국적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아동이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음.

- 1997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전에 구속이유만 통지하던 것을 혐의사실의 요지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취지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게 됨.
- 1993년 12월 기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1994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2차보고서 제87항에 나와 있음.
-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8년 9월에 입법예고되었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조치, 전문 아동보호기관 신설, 긴급전화설치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에 유인 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4월 직업안정법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직업안정법 제2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을 신설하였음.

2. 아동권리 관련조직의 개칭 또는 발족

- 공공분야

- 아동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총괄을 맡고 있던 보건사회부가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칭됨. 청소년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총괄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1998년 3월 ‘문화관광부’로 개칭됨.

- 민간분야

- 1996년 국내 학술단체로서 ‘한국아동권리학회’가 발족되었음. 동 학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을 통해 한국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5년부터 ‘한국이웃사랑회’가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1997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전국 22개 지회 및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3. 아동권리 증진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 입양 지원제도

- 국내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교육보호 확대

- 1996년부터는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보호의 범위를 기존의 중학생 및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였음.

- 결손가정 지원제도 확대
 - 부녀복지법에 근거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1995년부터는 부자가정으로 확대되었음.
- 보육 지원사업 전개
 - 한국의 보육사업은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1998년부터 보육료에 대하여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 정부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총재원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을 추진하였음.
 - 장애아동도 일반아동들처럼 동등한 보육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1999년부터 매년 30개소씩 설치하여 2002년까지 모두 120개소를 설치하여 장애아의 보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계획
 - 정부는 1998~2000년 동안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중앙공원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769개소를 확충 운영할 계획임.
- 아동학대 방지프로그램 운영
 - 1998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인 24시간 Hot-line System을 개설하고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확정함.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이 가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2.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아동을 물질적·정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이며,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새로운 청소년헌장 전문)이다. 아울러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함’(아동복지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전문과 11개 조항의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차보고서 제3항과 같다(부록 1 참조).
4. 또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 개정된 새로운 청소년헌장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새로운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기성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21세기 공존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부록 2 참조).

5. 1995년 현재 0~17세의 아동인구는 12,88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많아 여자아동 100명당 남자아동 110.0의 성비를 나타낸다. 아동인구는 점차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2,383천명(전체인구의 26.2%), 2010년에는 12,205천명(전체인구의 24.1%), 2020년에는 10,980천명(전체인구의 21.0%)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아동인구(1980~2000년)

(단위: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인구 (A)	37,407	40,420	43,390	45,092	47,275
아동인구 (B)	15,219	14,844	13,752	12,886	12,383
(B/A)	(40.7)	(36.7)	(31.7)	(28.6)	(26.2)
영아기(0세)	755	611	632	720	705
유아기(1~5세)	3,840	3,929	3,313	3,473	3,570
초등학생기(6~11세)	5,486	4,763	4,877	3,901	4,081
중·고등학생기(12~17세)	5,138	5,541	4,930	4,792	4,02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6. 1977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과 1989년에 도입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아동이 건전하게 태어나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보장의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아동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7.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은 아동복지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는 근간이 되었다. 아동복지에 관한 직접적인 기본법률인 아동복지법은 1981년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개정된 것으로, 산업화

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가족해체현상에 대응하여 종전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일반아동들의 건전육성과 아동복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본정신으로 담고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1993년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들이 지·덕·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개입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아동복지법내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특례법으로서 아동학대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8. 아동의 건전한 가치함양과 지식의 계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교육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9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1998년 4월 현재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4%),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위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9.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부조직 및 단체들(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보호회, 한국유니세프 등)도 아동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조항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제2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0.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 발효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였고, 협약의 내용중에서 현행 관련 법들과 상치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보를 조건으로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자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동 협약의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11.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세가지 조항은 부모와의 면접 교섭권 보장(제9조 3항),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1호), 아동재판에 관한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2호-5)이다. 자세한 내용은 1차보고서 제11항에 설명되어 있다.

12. 그러나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조항은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실현에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상소권 보장이란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 제534조에 의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만 허용되어 아동재판에 있어서 상소권 보장이 제한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하에서만 단심제를 인정하고 있을 뿐 평상시에는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의 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본 조항의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유보중인 조항 중 협약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13.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자국민에게 아동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홍보할 의무가 있다. 1993년에 발족된 한국유니세프는 1997년 시민참여 연대와 공동으로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과제로 삼아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아동복지연맹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의 회원으로서 비영리·비정부 민간기관인 한국지역사회복지회(Save the Children, Korea)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SBS와 공동으로 공익광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여 1999년 1월부터 방영할 예정이다.

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14. 대한민국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왔다.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 및 관련법규의 제·개정, 1988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개정, 1998년 새로운 청소년 헌장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권리의 내용은 본 보고서 제1장 제2항 참조).

15. 대한민국은 아동을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될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아동복지부문에 포함시

켜 놓았다.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현행 아동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복지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부록 3 참조).

16.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를 위한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아직까지 협약의 세가지 조항(제9조 3항, 제21조 1호, 제40조 2항 2호-5)이 유보되고 있어 협약과 국내법과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해서, 또한 질적인 차원의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보다 집중적인 법·제도적 및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조직·단체들이 협력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정, 정책수립 및 실행, 대국민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17.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사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994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개칭된 것이며, 문화관광부는 1998년 3월 문화체육부에서 개칭된 것이다).

18.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 산하에 있는 보육아동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는 ①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②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③ 국내입양사업, ④ 가정위탁사업, 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감독, ⑥ 불우아동을 위한 결연사업, ⑦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취업알선과 숙소제공), 그리고 ⑧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충으로 대별된다.

19.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은 국가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국은 산하에 청소년기획과,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수련지도과를 두고 있다. 198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와 함께 1990년 4월 청소년현장의 심의통과와 1992~2001년까지 장기 종합청소년정책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을 두어, 유아·특수 및 초·중·고교생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복지분야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1. 법무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 사회환경을 제거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찰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유관 행정기관 및 민간 자원봉사자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와 계몽 등의 사회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고, 성인 형사범과 소년범의 처리에 차등을 두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2. 가정법원의 역할은 주로 가정의 문제를 조정하는 데 있으나,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내리게 되며, 조정의 방향은 아동복지의 이념과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23. 노동부의 근로기준국 산하의 부녀소년과, 임금복지과, 근로기준과, 부녀지도과 등에서 아동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각종 문화활동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24.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아동복지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복지연구실은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외에 입양, 보육사업, 아동학대, 아동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선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은 아동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전 아동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발전방안 연구와 이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5.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상매체물·유흥 접객업소 등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음반·비디오·간행물·청소년 불법고용 등 유해한 사회환경의 규제와 단속, 청소년 음주·흡연·약물남용 등 비행예방,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6.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여러 민간단체 및 기관들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단체로는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청소년 대화의 광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민간 조직으로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시설협회,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등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아동복지위원회와 각시도에 설치된 지방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발전에 관한 사항, 불우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및 심의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발족된 학술단체인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을 통해 한국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의 건전출산과 가족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3장 아동의 정의

27. 아동복지법(제2조)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들에서는 아동을 서로 다르게 지칭하거나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28. 대한민국의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국민투표권,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을 두게 되며,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9. 헌법 제32조 5항에 의하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자에 대해 취업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금지하였으나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15세 미만자에 대해 취업을 금지시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근로기준법(제62조)은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취업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30. 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은 ‘15세 미만인 자’가 된다.

31. 대한민국의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아동’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에 대하여는 처벌보다 교정과 선도를 통한 사회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32. 민법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 혼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가능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성간의 생리적 및 정신적 발달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혼인과 부모의 동의에 대한 내용은 1차보고서 제32항과 같다.

33. 병역법(제11조)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자’는 병역감당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한편 병역법(제19조)은 17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를 지원할 경우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34. 아동의 법정 증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법정의 절차가 요구하는 능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아동의 증언을 증거로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제159조 제1호)은 ‘16세 미만자’에 대하여서는 선서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증언과 선서능력

에 관한 내용은 1차보고서 제34항과 같다.

35.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흡연, 음주,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등에 출입하거나 성도덕 등 풍기문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6.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며, 16세 이상의 사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37.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7조~제23조)은 청소년에게 영상음향물, 공연물, 정보통신물, 간행물, 광고물 등 유해매체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26조)은 ‘18세 미만의 자’에게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를 금지하며, ‘18세 미만인 자’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을 금지·제한한다.

38.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상 최근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18세 미만인 자’라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4장 일반원칙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39.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분
분에 따른 특권과 불합리한 차별 및 연좌제를 금지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부당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1차보고서
제37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40. 유교적 전통에 따른 일부일처제 및 법률혼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
습으로 인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비하여 사회
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부는 모든 개인의 인
권보호를 위하여 법률적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대체적으로 평등
하게 취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법(제1000조)은 재산상속순위
등 대부분의 경우에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
나, 호주승계에 관하여서만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
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85조 1항).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
자의 경우 본처의 동의가 없으면 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없다는 판례
가 있다.

41.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민족간의 분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아선호관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정치, 문화, 교육의 분야에서
성애에 의한 기회의 차별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정의상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42. 부모는 아동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은 부모에게 아동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43. 아동복지법(제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을 위하여 생계, 교육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44. 청소년보호법(제3조~제5조)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또는 친권자를 대신하는자)와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5.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진다. 아동이 우선시되는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재난구조시 아동 및 여성구출 우선, 아동에 대한 각종 구매 및 입장권 할인혜택, 아동안전을 위한 학교주변 도로안전지역 설정, 아동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유해업소 설치규제 등이 있다.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46. 대한민국 헌법(제10조)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47. 아동복지법(제1조)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정책을 수립·실천토록 하고 있다.

48.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하여 처벌보다 교정을 통한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 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소년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 이를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4조)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본 보고서의 제3장 제31항 참조).

49. 청소년보호법(제1조)은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의 발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50.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나, 민법(제

924조)은 친권자나 친권자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관한 상실선고 청구와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등에 관한 절차는 1차 보고서 제46항의 내용과 같다.

51. 민법(제920조)은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재산행위와 권리취득, 의무면제행위에 대해서는 1차 보고서 제46항의 내용과 같다.

52. 가사소송규칙(제100조)은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는 자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6조 제2항)은 입양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제5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53. 종래 민법(제781조 제1항~제3항)은 아동의 입적에 관하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고,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개정된 민법(제781조 제1항)은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출생한 아동의 국적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54. 종래 대한민국의 국적인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1차 보고서 제5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관계로 출생당시 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여성과 출생지주의의 국적법 국가 출신인 외국인 남성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입적할 부가 없어 국적법상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7년 12월 국적법 제2조 제1항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아동의 무국적 방지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되었다.

55. 출생한 아동의 호적등재와 출생신고의 상세한 절차는 1차보고서

제49항 및 제50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호적법 제49조 제2항에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과 국적을 기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부모 또는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관계를 명확히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 출생신고는 출생지의 행정관서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재항목은 1차 보고서 제50항과 같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57.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호적에 등재된다. 호적에 기재되는 상세한 내용은 1차보고서 제52항에 설명되어 있다.

58. 대한민국의 국적상실사유에 관하여는 1차보고서 제5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종전 국적법(제8조, 제12조 제7호 등)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예외없이 우리 국적을 다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개인이 희망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개정된 신 국적법(제10조 제2항)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원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신분요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제8조의 취지가 보다 확고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제12조에서는 이중국

적 선택권을 포함한 국적선택에 있어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국적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59. 국적선택의 자유에 관하여서도, 종전 국적법(제8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미성년인 자녀에게 반드시 부모와 함께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었으나, 아동의 의사를 무시한 국적강요의 여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 국적법 개정시에 동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국적보유에 관한 아동의 권익보호수준을 제고하게 되었다

60.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고, 부모가 혼인한 때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1차보고서 제 55항에 설명한 바와 같다.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61.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13조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사회상황을 감안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62. 표현의 자유는 내면의 사상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무제한의 자

유는 아니며, 사회적 성격을 함께 가짐으로써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권리의 행사에 따른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63.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 등에 의한 제한은 1차 보고서 제58항 및 제59항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64. 헌법(제37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자세한 설명은 1차 보고서 제59항에 나와 있다.

65. 대한민국은 1차 보고서 제60항 내지 제6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장은 아동에 대하여도 차등없이 적용된다.

66. 민법(제913조)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教養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나 법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자녀들

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연계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닌다 해도 학생들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 무시험 배정에서도 학생의 종교를 참작하여 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학생이 원하는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67.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는 아동에 대하여도 차등없이 적용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권리로 확고히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도 역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제한에 관한 근거 및 그 상황 등은 1차 보고서 제64항 및 제6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68. 대한민국의 헌법(제16조, 제17조)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언론·출판 등에 의하여 명예와 권리 및 사생활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제21조)에 의하여 그 피해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관하여는 1차 보고서 제66항 및 제67항의 내용과 같다.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69. 한국의 방송구조는 1차 보고서 제68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민영 혼합체제이며 방송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1997년 현재 지상파 방송 방송사는 일반방송 7개, 종교방송 5개, 교통 또는 교육 등 특수방송 2개로 모두 14개사에 이르며 지방방송을 포함한 방송국의 수는 모두 70개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5개 텔레비전 및 19개 라디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1995년부터는 케이블 TV방송이 개시되어 1997년 5월 기준으로 187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다(문화관광부, 1998). 특히 4개의 공중파 TV 방송은 매일 1시간 이상 어린이 방송시간을 방영하고 3개 케이블 TV방송이 어린이 전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70. 1996년 출판사의 수는 12,458개사이고 발행도서는 26,664종, 약 1억5천8백만권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양서선택을 돕고 좋은 책의 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서를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여 배포하고 있다. 도서관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열람가능한 도서관이다.

71. 한편 유해출판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14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 미성년자보호법(제2조 제2항)에 의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출판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포장하여 구분·격리 유통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다.

72.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방송사내에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종 공연, 영화, 음반 및 비디오물 심의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도서심의를 위한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있다. 아동에게 역기능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폭력장면의 과다 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에서 금지되고 있다. 방송화면에 시청 금지연령(18) 또는 부모와 함께 시청해도 좋은 연령(13)을 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73. 제작 또는 수입된 영화는 상영전에 연령별로 관람 가능한 정도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진흥회로부터 영화의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하며 등급은 ①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② 12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15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④ 18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음반 및 비디오물 및 영화·음반·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한국공연예술진흥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 PC를 통한 음란물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강화는 검토되어야 한다.

74. 아동복지법(제18조)은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공여, 교환, 전시,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하여 아동이 건전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협약 제37조 제1항)

75.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2항)은 고문 및 진술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제125조)은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자가 폭행·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제309조)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금하고 있고, 1차 보고서 제75항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한 수사과 재판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월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처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제적으로도 천명한 바 있다.

76. 협약에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형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법(제59조)은 18세 미만인 소년법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 이를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의 선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제1항, 2항)

77.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친권의 본질이 자녀에 대한 지배권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1998년 중에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친권의 본질이 지배권이 아니라 자의 보호·배려에 관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에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는 표현으로 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912조 제2항으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최선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 제도가 부모를 위한 친권제도에서 자를 위한 친권제도로 전이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협약의 원칙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78. 또한 민법 개정법안은 제909조 제5항에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협의내용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고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동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후견적 관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의 후견에 대한 책임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9.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조치로는 근로기

준법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유급휴가 및 유급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79항에 설명된 바와 같다.

80. 대한민국은 아동양육 책임수행을 위하여 부녀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 등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법률의 구체적인 목적은 1차 보고서 제80항에 설명된 바와 같다.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81.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 상세한 사유와 절차는 1차 보고서 제8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82. 1차 보고서 제8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은 “부모 중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면접교섭권의 제한에 관하여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청구 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면접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83. 협약에서는 아동의 감금, 투옥 및 국가의 억류 중 사망 등의 경우에 대상 아동의 소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종래,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제87조)은 변호인 등에 대하여 구속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의 통지내용에는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정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종전에는 구속이유만 통지하던 것을 혐의사실의 요지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규정취지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84. 15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나,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85. 1차 보고서 제85항과 같이 헌법(제1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외거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86. 유효한 사증과 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특정 질병보유자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제11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의 출국 역시 동법 제29조에 규정된 범죄혐의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유로운 출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출입국은 위법률의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1차 보고서 제86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제한은 협약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87.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10일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다. 출입국관리법(제16조 제2항, 제64조 제3항, 제76조 제2항~제7항)은 UN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을 추방·송환하는 경우에도 UN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추방·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추방·송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를 새로 신설하였다. 특히 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17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으며 재입국시에는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난민으로 인정받아 출입국하는 경우에 이를 특별보호함으로써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하고 있다.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88. 아동복지법(제28조)은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단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89.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워지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게 된다. 1997년에 발생된 요보호아동은 6,734명으로 이들중 58%인 3,917명이 시설에 입소되었다.

90. 한국전쟁이후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 보호해야 했던 사회적 요구의 대응에서 비롯된 아동보호시설은 계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되어 오다가 1970년대 이후 요보호아동의 발생 감소로 점차 줄어들었고, 1990년대 이후에도 감소추세에 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아동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에의 치중은 대리양육환경 개발의 미비함 때문으로 다양한 대리양육환경 개발이 큰 과제이다.

〈표 2〉 요보호아동 발생현황(1990~1997년)

(단위: 명)

연도	계	발생유형				보호내용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미아	가출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연고자 인계 등
1990	5,721	1,844	2,369	360	1,148	3,734	1,134	853	-
1992	5,020	1,481	1,813	241	1,485	3,122	1,212	686	-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
1994	5,023	1,386	1,781	192	1,664	2,953	927	760	383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2,819	505	472	780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3,161	727	479	584
1997	6,734	1,380	1,825	342	3,187	3,917	1,209	898	71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1998.

91.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제도가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가 수양부모훈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제50항에 설명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입양을 위한 전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기숙사 형태의 기존 아동보호시설을 점차 소숙사시설이나 그룹홈의 형태로 개조하여 시설아동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1997년부터는 5개소에서 그룹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백서』).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92.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절차는 1차 보고서 91조에서 밝힌 바와 같다. 1차 보고서의 유보사항의 하나로 협약에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입양을 인정하나 국내입양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에 의해 입양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학계 및 민간기관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3. 1997년 3,469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그 중 1,412명은 국내에 2,057명은 국외로 입양되었다. 최근의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급격한 감소가 없는 한 3,000명 정도에 이르고, 이중 해외입양이 2,000명 정도를 점유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비율은 1975년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의 2.8배, 1987년에는 3.1배이던 것이 차차 감소하여 1993년에 1.9

배 1997년에는 1.5배가 되었다. 1997년말 현재 해외입양대상국은 10개국으로 97년 전체 해외입양아의 79%가 미국에 입양되었다.

〈표 3〉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1958~1997년)

(단위: 명, %)

연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1994	13,586	4,792	8,794	35.3
1995	3,205	1,025	2,180	32.0
1996	3,309	1,229	2,080	37.1
1997	3,469	1,412	2,057	40.7
계	193,125	54,639	138,486	28.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1998.

〈표 4〉 1997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단위: 명)

국 가	입양아 수
미 국	1,620
스 웨 덴	66
덴 마 크	65
노 르 웨 이	112
네 텔 란 드	36
호 주	61
프 랑 스	66
룩셈부르크	25
캐 나 다	5
스 위 스	1
	2,05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1998.

94. 아동의 국내입양사업은 5개의 입양기관과 시·도별 25개의 국내입양 지정기관 및 시·군·구의 아동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95.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위한 사회서비스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1998년 현재 4개 민간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해외입양도 국내입양과 비슷한 절차를 가지나, 인종·문화·언어의 이질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적응하고 성장해야 하고, 입양아 및 양부모는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사후관리의 상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94항에 설명된 바와 같다.

96. 1997년도의 입양아동을 보면 98%가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며, 나머지 2%는 가정빈곤, 부모사망 등의 이유로 입양이 의뢰되었다.

97. 영리추구 목적의 입양알선을 금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18조 제6항)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금품취득 목적의 아동양육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입양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입양을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의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98.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한 처벌과 해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과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가

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 관하여는 1차 보고서 제97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외에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10조, 제27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입양·알선업을 한 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99.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제287조)은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행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은 그러한 범행의 목적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0. 이러한 기본적인 처벌법규 외에,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아동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가정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속한 격리조치와 심리적인 치료 등을 통한 성향개선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101. 한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3조)은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보호하고 건

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동법 제18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1998년 9월에 입법예고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조치, 전문아동보호기관 신설, 긴급전화설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10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은 가정내 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처벌 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기관 상담위탁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교정대책을 강구하였다.

103. 아동의 유기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가정문제 등으로 유기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게 되는데, 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4. 한국에서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훈육과 신체적 학대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훈육 목적으로 허용되던 교사에 의한 체벌 조항(교육법 76조)이 자동소멸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105.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1985

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설립한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1989년 설립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하부조직인 아동학대지역신고센터가 있다. 또한 1990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교육폭력 추방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한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1995년부터 한국이웃사랑회가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린이보호회가 1998년 24시간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106. 아동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보육시설을 말한다. 1997년 12월말 현재 전국 274개 시설(영아원, 육아원, 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16,937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전체 시설당 평균 아동수는 62명이고, 육아원의 경우는 64명이다.

〈표 5〉 연도별 영·유아보호시설 및 아동현황(1975~1997년)

(단위: 개소, 명)

연 도	시설수	아동수
1975	350	32,996
1980	287	23,357
1985	271	24,430
1990	261	22,535
1995	273	17,319
1997	274	16,93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1998.

〈표 6〉 아동복지시설 현황(1996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당평균아동
영아원	26	1,710	66
유아원	214	13,752	64
직업보도	6	245	40
교호	6	393	65
자립지원	11	198	18
계	263	16,298	62

자료: 보건복지부, 『199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1997.

107. 그 동안 요보호아동의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아동복지시설수와 시설보호 아동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시설보호아동은 전체아동의 1%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7년말 이후 도래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으로 시설보호아동의 수는 약간 증가될 전망이다.

108. 시장·도지사·구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의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도·감독한다.

제7장 기초보건 및 복지

제1절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

109. 한국은 1970~1980년대를 거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한국아동은 보건, 영양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았다. 1980년에 출생 1,000명당 17.3명이던 영아사망율이 1990년에는 12.8명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1993년에도 9.9명으로 1990년 12.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모성사망비는 1995~1996년간 10만명당 20명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산전관리 수진율은 99.6%이며, 시설분만율은 99.7%이다(조남훈 외, 1997).

110.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 등록관리사업,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의 장애발생 예방사업 등을 포함한다. 1998년 현재 정부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245개소), 보건의료원(17개소), 보건지소(1,329개소) 및 보건진료소(2,039개소)가 있다. 아울러 대한가족계획협회 산하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11. 정부 아동보건사업의 주요 목표는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아동인구의 사망률, 유병률, 장애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1987년 이후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의 정기검진은 생후 6개월, 18개월 시기에 행해지고 있으며, 정신박약아 발생예방을 위하여 1996년까지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천성대

사이상검사를 1997년 1월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무료로 확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하여는 특수분유 및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필요한 BCG, DPT, 폴리오, MMR 등의 기초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표 7〉 영유아 예방접종률(1994년)

(단위: %)				
구분	BCG	DPT	폴리오	MMR
비율	98.0	99.0	99.0	94.0

자료: 최정수 외,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1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88년 48.1%에서 1997년 14.1%(혼합수유 포함시 52.5%)로 감소하였다. 모유수유실천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UNICEF 한국위원회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는 1994년 8월 1일부터 모자동실제 실시에 따른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관리료 등을 의료보험급여항목에 포함하고 병의원의 모자동실제의 설치·확산을 위하여 의료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13. 어린이의 대표적 질병은 폐렴,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으로, 1995년 현재 2주간 유병률은 0~4세 34.2%, 5~9세 19.7%, 10~19세 8.8%이다(최정수 외, 1995).

114. 신생아의 장애 출현율은 0.6%(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로 나타나고 있다.

115. 어린이의 주요 사망원인은 연령별로 0세의 경우 선천성 이상,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나타난다. 특히 교통사고의 비중이 커서 1~9세 및 10~19세의 사망원인 1순위가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다.

〈표 8〉 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1997)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0세	선천성기형(593)	주산기 질환(248)	영아급사증후군(143)	심장질환(64)	운수사고(60)
1~9세	교통사고(926)	사고성 익수(257)	선천성 기형(215)	추락사고(135)	백혈병(112)
10~19세	교통사고(1567)	자살(489)	사고성 익수(372)	백혈병(157)	심장질환(153)

주: ()안의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아수임.
 자료: 통계청, 『1997 사망통계연보』, 1998.

116. 1997년도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53명이며, 이는 같은 해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5%에 해당한다.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9〉 교통사고 사망자(1990~1997년)

(단위: 명)

연도	14세 이하	15~20세	전체 사망자수
1990	1,537(12.5)	584(4.7)	12,325
1991	1,566(11.7)	834(6.2)	13,429
1992	1,180(10.1)	794(6.8)	11,640
1993	998(9.6)	650(6.2)	10,402
1994	890(8.8)	656(6.6)	10,087
1995	809(7.8)	805(7.8)	10,323
1996	932(7.4)	941(7.4)	12,653
1997	753(6.5)	988(8.5)	11,603

주: ()안은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백분율임.
 자료: 경찰청, 1997년도 교통사고 통계

117.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지역 여건과 학년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시간을 연간 21~23시간 확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교통교육담당자 1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각종 자료(교통교육교재, VTR 자료 등)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녹색어머니 회원을 교육하여 교통안전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다.

118. 1967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내 보건시설 확충 및 환경위생 개선·신체검사·질병의 예방·학교보건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교보건의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인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지난 199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1998년부터 초등학교는 전면급식이 실시되어 전국 5,688개교의 학생 380만명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고등학교는 ‘99년 전반기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119. 정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26조에는 청소년보호운영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립병원·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치료·재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120. 1997년말 현재 전체 아동의 0.39%인 약 5만명이 장애아동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나, 중증장애아동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다. 전체 장애아동의 약 12.4%인 6,235명이 1997년말 현재 180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있다. 그 중 3개소는 장애영아시설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아동과 성인이 함께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이다.

〈표 10〉 전국 장애아동의 연령별·성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1995년)

(단위: 1000명당)

연령	계	성 별		장 애 종 류 별				
		남	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0~4세	1.49	1.69	1.26	0.64	0.04	0.25	0.51	1.21
5~9세	3.95	5.08	2.72					
10~14세	4.62	5.46	3.72	2.00	0.25	0.38	0.54	2.26
15~19세	6.31	8.27	4.19					

자료: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21. 장애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위한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1988년에 제8회 서울장애인을림픽대회가 개최되어 장애아동 등 장애인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며, 198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발생 예방, 의료보장, 재활용구의 보급,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1996년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조정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관련부처 장관 등과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복지, 고용 및 특수교육 부문을 종합하여 2002년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22.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 및 보장구 지급, 교육비 지원, 각종 세금과 요금의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체는 상용근로자 총 수의 2%를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며,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준고용율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고용촉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고 취업후에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 적응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신체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의 설치·운영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현재 2,8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전국 대도시·관광지 7곳에 장애인생산품공판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매년 4월 20일),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123. 장애인 대상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병·의원은 총 14개 소로, 이들 재활병원의 운영비는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1994년에 200명상 규모의 국립재활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1997년 현재 장애인들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단위에 건립된 32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 시각, 청각 및 정신지체 등 일정유형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14개 종별복지관이 있다. 또한 장애인가족의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과 재가장애인을 방문하여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24. 심장의 발육부진, 기형 및 기능장애 등을 지니고 태어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중 가정이 가난하여 수술비의 자부담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1984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심장재단이 설립되어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1994년부터는 심장병 이외의 기타 질환 어린이의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현재 52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까지 12,832명의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질환으로는 얼굴기형 391명, 신장이식 239명, 골수이식 150명, 기타 질환 361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총 13,974명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하였다. 그 외 순수 민간단체인 어린이보호회에 서도 5개 병원과 협약하에 결손 빈곤가정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 오고 있다.

제3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125.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1988년 1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1989년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하여 예방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추진 중에 있다.

126. 의료기관의 기능분담은 1차 보고서 제12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1998년부터 의료전달체계의 지역 적용을 광역화하였다.

127. 1996년 현재 소아과 전문의는 2,902명으로 전과목 전문의 34,726명의 8.4%이며, 매년 약 200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1차 진료기관인 소아과 의원은 1,642개소, 병원급 495개소 가운데 282개소에 소아과가 설치되어 있고, 종합병원급 276개소 가운데 275개소에 소아과를 두고 있다.

128. 1995년도에 행해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인구 100명당 2주간 유병률은 0~4세가 48.3%, 5~9세는 34.8%, 10~19세는 21.7%이고, 이들의 의료기관 방문율은 0~4세가 41.1%, 5~9세가 25.6%, 10~19세가 13.5%로 나타나고 있어, 0~4세가 이환율도 높고 의료서비스의 이용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0~19세의 연간만성질환유병률은 13.8%이다(최정수 외, 1995).

〈표 11〉 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1995년)

(단위: %)

구 분	0~4세	5~9세	10~19세
2주간 유병률	48.3	34.8	21.7
2주간 외래이용률	41.1	25.6	13.5

자료: 최정수 외,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29. 아동복지법 제14조는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제3항)

130.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34조 2항에 밝히고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1차 보고서 제127항에서 밝힌 바 있는데, 1996년부터는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보호의 범위를 전체 중학생과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였다. 1997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아동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971,519명중 24.4%인 237,148명으로 전체 아동인구수의 1.9%에 해당한다. 또한 1차 보고서 제127항에서 설명한 바 있는 부녀복지법에 근거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1995년부터는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12〉 18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아동수(1997년)

(단위: 명, %)

생활보호 아동수(A)	생활보호대상자수(B)	생활보호대상자 대 비율(A/B)	전체아동수(C)	전체아동인구 대 비율(A/C)
237,148	971,519	24.4	12,760,577	1.9

자료: 보건복지부, 『19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특성분석』, 199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31.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여성취업인력, 특히 취업모가 증가하고, 가족이 점차 소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보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녀의 양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의 보육사업은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보육료에 대한 면제 및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1998년부터 보육료에 대하여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보육지원체계로서 중앙과 지방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관련 자료 제공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32. 정부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총재원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1993년말 5,490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은 1997년말 15,375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영유아 520,959명이 보육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13〉 시설별 보육현황(1990~1997년)

구 분	1990	1995	1996	1997
국공립보육시설	360	1,029	1,079	1,158
민간보육시설	39	4,125	6,037	8,172
직장보육시설	20	87	117	158
가정보육시설	1,500	3,844	4,865	5,877
계(개소)	1,919	9,085	12,098	15,375
아동수(명)	48,000	293,747	403,001	520,959
예산(억원)	191	830	1,098	1,33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33. 부모들이 장애아동들과 혼합하여 보육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처럼 동등한 보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1999년부터 매년 30개소씩 설치하여 2002년까지 모두 120개소를 설치하여 장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신설해 나가는 한편,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육사업의 평가를 실시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5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

134. 대한민국은 가족이 가족성원의 복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사회와 국가가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135. 요보호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공적부조사업 외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1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사회사업 기관인 한국복지재단(구 한국어린이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결연사업의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33항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1997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아동 22,009명의 대상아동중 18,615명이 결연되어 85%의 결연율을 보이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아동은 대상아동 16,547명의 89%인 14,749명이 사회각계 인사와 결연되어 있다.

〈표 14〉 결연사업 실적(1997년)

(단위: 명, 원, %)

구분	대상자수	결연자수	결연율	결연금	후원자수
아동복지시설아동	22,009	18,615	85	3,613,760,000	30013
소년소녀가정아동	16,547	14,749	89	5,617,604,800	27510
계	38,556	33,364	87	8,781,425,039	57523

자료: 한국복지재단, 내부자료, 1998.

136. 특히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후원자 결연사업은 정부가 1985년 처음 시작한 것으로, 그 성격은 1차 보고서 13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7년에는 9,544세대에 16,547세대원이 있다.

〈표 15〉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1985~1997년)

(단위: 가구, 명)

연도	세대수	세 대 원					
		계	미취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985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89	6,029	13,233	450	3,749	3,814	1,632	3,588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8,107	15,118	124	2,914	5,261	4,392	2,427
1996	8,849	16,001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자료: 보건복지부, 『업무자료』, 각년도.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137. 대한민국 헌법(제31조 제1항~제3항)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2조 제1항,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시설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치, 경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38. 대한민국의 현행 학교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수는 전 국민의 4분의 1에 이르는 1,171,218명(이중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5.2%인 5,289,559명), 교원수는 42만8천명, 학교수는 19,876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육집단에 대한 지원체제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16개), 시·군의 하급교육청(180개)이 있다.

〈표 16〉 학교 현황(1998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8,973	20,091	533,912	26,721
초등학교	5,688	10,021	3,834,561	140,121
중학교	2,736	49,259	2,011,468	96,016
고등학교	1,921	48,244	2,326,880	105,945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139. 대표적 교육여건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는 1998년 4월 현재 초등학교 34.8명, 중학교 40.8명, 고등학교 48.2명(일반계 49.0명, 실업계 47.1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표 17〉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1995~1998년)

(단위: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5	28.4	36.4	48.2	47.9
1997	28.2	35.1	43.6	49.2
1998	26.5	34.8	40.8	48.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40.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8년 현재 초등학교 27.3명, 중학교 20.9명, 일반계 고등학교 22.6명, 실업계 고등학교 20.9명이다. 그리고 법정배치기준 대비 정원확보율(공립 교사)은 1998년 현재 초등학교 96.2%, 중학교 85.3%, 고등학교 88.8%이다.

14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아동도 대한민국의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가. 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

142. 1950년에 시작된 초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은 1998년 현재 거의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다. 다만 학령 아동이 폐질, 병약, 발육부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

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초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143.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8조).

14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도 우리 나라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의 입학과 전학에 대해서는 1차 보고서 제 140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중학교

145. 헌법(제31조)과 교육기본법(제8조)은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 1985년 이후에는 도서벽지 지역에, 1992년 이후에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군지역)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도서·벽지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에 이르고 있다.

<표 18>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1988~1996년)

(단위: 천명,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실시대상	도서·벽지 군지역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1학년	전학년 1,2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수혜학생		228	209	190	147	289	418	505	478	481
의무교육비율		9.0	9.0	8.8	6.6	12.3	17.3	20.1	19.3	20.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46. 중학교의 교육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과에서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질병, 빈곤, 가뭄과 기아, 인구과잉, 환경 파괴, 오염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3) 고등학교

147.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업계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1998년 현재 99.4%이다.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율은 1998년 현재 40.6이다.

148.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 국어, 한문,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등의 13개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교류와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에 따른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내용과 세계의 여러 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4) 고등교육기관

149. 1998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60.1%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다. 1998년 현재 2년제 대학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346개의 고등교육기관에 2,950,826(여학생 1,109,185)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교육 및 연구여건의 확충,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 고등교육기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19〉 학교급별 진학률(1980~1998년)

(단위: %)

연 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
1980	95.8	84.5	23.7
1985	99.2	90.7	36.4
1990	99.8	95.7	33.2
1995	99.9	98.5	51.4
1998	99.9	99.4	64.1

주: 고등교육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개방대학 및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50.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44항과 같다.

5) 유치원

151.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5조, 36조). 유치원 원아수는 1993년의 469,380명에서 1995년 529,265명, 1997년에는 568,096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5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률은 1981년 17.3%, 1990년 42.7%, 1997년에는 45.0%로 증가하였다.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확충하여 2005년에는 70% 수준으로 높혀 보건복지부 보육시설(30%)과 합하여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0〉 유치원 취원율(1980~1997년)

(단위: %)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7
유치원	4.1	18.9	31.6	39.9	39.9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6) 특수학교

152.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55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실제운영형태는 지역의 형편, 장애인의 분포,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병원·복지시설 내 특수교사 파견, 재택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특수교육은 초중학부 교육대상자에게는 의무교육, 유치부와 고등부 교육대상자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가 전액 면제되며 통학버스비, 기숙사 비용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예산은 1995년 2,241억원, 1996년 2,382억원, 1997년 2,986억원(총 교육예산의 1.6%)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표 21〉 특수학교 개황(1994~1997년)

연 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94	106	1,987	21,252	3,303
1995	108	2,062	21,607	3,461
1996	109	2,109	21,860	3,613
1997	114	2,264	22,569	3,93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53. 교육부는 1998년 현재 중도장애아동 42,000명, 경도장애아동 183,000명, 총 22만5천명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중도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1998년 4월 현재 시각장애 12개교, 청각장애 20개교, 정신지체 62개교, 지체부자유 18개교, 정서장애 6개교로 총 118개 학교에서 23,487명을 교육하고 있고, 경도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은 3,728개 학급으로 25,031명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21.6%(중도장애아의 55.9%, 경도장애아의 1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78.4%는 일반학교 등에 취학하고 있다.

〈표 22〉 특수교육현황(1993, 1998년)

구 분	장애별	1993년			1998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교	시각장애	12	154	1,359	12	174	1,379
	청각/언어장애	20	396	4,007	20	342	2,848
	정신지체	57	1,117	12,598	62	1,446	14,990
	지체부자유	14	242	2,568	18	324	2,971
	정서장애	3	45	453	6	129	1,299
	계	106	1,954	20,958	118	2,415	23,487
특수학급	일반학교	2,638	3,321	28,210	2,952	3,728	25,031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1993, 1998.

154. 이를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5,424학급을 증설 운영하여 장애아동 전원에 대한 특수교육의 수혜범위 증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학력 확보를 위해 9개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장학관을 이미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 직제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장애별 교육방법 및 내용의 연구, 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특수교원연수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특수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수학습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국립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연구 및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 사립학교

155. 사립학교는 총학교수의 33.2%, 총학생수는 36.8%를 차지하며 대학의 경우는 각각 75.7%, 73.1%로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국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23〉 사립학교 현황(1997년)

구분	총학교수	사립학교수(%)	총학생수	사립학생수(%)
유치원	8,973	4,518(50.3)	533,912	401,326(75.1)
초등학교	5,688	76(1.3)	3,834,561	54,563(1.4)
중학교	2,736	685(25.0)	2,011,468	465,493(23.1)
고등학교	1,921	922(47.9)	2,326,880	1,320,819(56.7)
전문대학	158	143(90.5)	801,681	771,970(96.3)
대학	185	140(75.7)	1,645,247	1,202,527(73.1)
기타	215	121(56.3)	394,372	41,110(10.4)
계	19,876	6,605(33.2)	11,548,121	4,257,808(36.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8) 직업학교

156. 본격적인 직업기술교육은 학제상 9학년을 마친 후기 중등학교(High School) 단계부터 시작된다. 즉 10학년제부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분화되어 학생들은 인문고등학교(Academic School) 또는 실업계고등학교(Vocational School)로 진학한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내

용과 편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고, 상업고, 공업고, 수산해양고, 가사실업계, 실업고, 종합고의 명칭을 가진 7개 유형의 학교로 구분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프로그램 규모도 변화하여 현재 유형별 비중은 상업계고 32%, 공업계고 25.9%, 종합실고 37.6%, 농수산계고 4.5%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학교들은 운영상 공·사립으로 구분되나,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57. 프로그램 운영상 산업체요구에 부응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3년부터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2+1체제유형인 산학협력교육(Co-operative Education)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1체제란 10학년에서 11학년까지 2년간 학교 내에서 이론교육을 수행하고 12학년인 1년간을 산업체현장에서 일을 통한 실무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도 현재 학생 9,110명, 1,928개 기업, 45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58. 실업계고등학교는 진로 및 진학면에서는 인문계고교와 같이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열린교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진로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마친 대부분 학생들은 국가기능사자격(Vocational Skill Certificate)제도에 따라 프로그램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술 자격증을 획득하고 직업세계나 동일계 대학으로 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구조 변화와 고등교육수요의 급증추세의 영향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실업계 졸업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도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 연계운영과정을 도입하여 실업계고교 출신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기회를 촉진시키고 있다.

159. 실업계학교 이외에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위탁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1학년을 마친 인문계 고등학교학생 가운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인접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와 공·사립직업훈련기관에 1년간의 기능/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 현재 약 19,00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표 24〉 실업계고등학교 현황(1998년)

구 분	총계 (A)	인문계 (B)	실업계(C)						C/A (%)
			계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 해양	종합 실업고	
학교수	1,921	1,149	772	26	200	247	9	290	40.2
학생수	2,326,880	1,399,394	927,486 (100.0)	20,838 (2.2)	316,828 (34.2)	342,644 (36.9)	6,983 (0.8)	240,193 (25.9)	39.9
교원수	105,945	61,680	44,265	1,364	14,924	14,969	440	12,568	41.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표 25〉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 추이(1995~1997년)

연 도	진학자수	졸업자수	진학률
1995	49,699	259,133	19.2%
1996	60,373	274,696	22.0%
1997	79,961	273,912	29.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60. 직업훈련제도는 정규교육과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써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정식 도입된 이래, 1976년 현행의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업인력 양성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게 되었다.

161.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는 비진학청소년의 무기능 유희인력을 기능 인력화시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마친뒤에도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적극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162. 직업훈련과정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용별 양성·향상·진직·재훈련으로 구분하여 평생훈련체제로 운영되며 훈련직종은 모든 직업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훈련실시주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직업훈련(1997년, 49,257명), 사업내직업훈련(1997년, 173,686명) 및 인정직업훈련(1997년, 22,101명)으로 구분된다.

163.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 업무경험이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을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등에 배치하여 청소년의 직업적성검사 및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고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를 하고 있다. 특히 진로지도경험이 있는 전직 중·고등학교 교사, 상담업무경력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직업안정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을 매년 3~6월 및 9~11월 기간중 지방노동관서의 명예직업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흥미 검사, 직업상담, 직업정보제공과 직업지도 선정학교 운영 및 직업관확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 기타 교육제도

164. 정규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제도가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 1998년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13,543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산업체 부설고등학교는 14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학생수는 5,216명이다

165.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98조, 소년원법 제29조).

166. 소년원법은 비행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퇴원후 학업좌절로 인한 재비행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교과교육소년원을 두고,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소년원법 제29조 제1항, 소년원법 시행령 제91조). 이 밖에도 직업훈련 소년원을 설치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취업희망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소년원 보호소년직업훈련 인원은 1996년 현재 803명이다(법무부 내부자료).

나. 교육예산

167. 대한민국은 헌법(제31조)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권 실현을 위하여 교육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투자 및 교육예산에 대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55항과 같다.

168. 지난 20여년간 국내총생산(GNP)과 정부예산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GNP 대 공교육비규모)은 국내총생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없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의 공교육비는 교육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합쳐 37조840억원으로 GNP 대 공교육비 규모는 8.2%이다.

〈표 26〉 교육예산의 규모(1990~1998년)

(단위: 10억원, %)

연도	GNP (A)	정부예산 (B)	교육부 예산 (C)	지방교육 예산 (D)	의무 교육비 (E)	구 성 비		
						C/A	C/B	E/C
1990	171,468	27,464	5,595	4,837	2,642	3.3	20.4	47.2
1993	256,685	41,936	9,880	8,684	4,301	3.7	23.6	43.5
1998	450,141	77,738	18,128	18,956	12,861	4.0	23.3	70.9

주: GNP는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69. 학생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결석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56항~제157항과 같다.

170.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 등과의 국제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국과의 문화협정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 교류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58항과 같다.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171.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 교육이념은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 국제윤리까지 포함된 포괄적 의미의 선언이다.

172.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3)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173. 아동의 놀이는 삶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정부는 아동복지법(제10조)에 의거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74. 문화관광부와 교육부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저급한 대중문화의 범람에 대처하여 올바른 청소년 문화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2000년 동안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중앙공원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769개소를 확충 운영할 계획이며 건전한 청소년의 여가 문화활동으로서 수련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의 설치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표 27〉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1990~1997년)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205	223	214	284	287	370	432	470
생활권	67	68	72	112	132	174	189	194
자연권	122	137	133	166	148	180	219	241
유스호스텔	16	18	9	6	7	16	24	25

자료: 문화체육부, 『청소년 수련시설 편람』, 각년도.

175.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정부는 청소년 문예활동 보장사업으로 문예활동 교사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에는 99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청소년대상 문화강좌를 열고 있으며 1996년에는 167개 교에 400여 강좌를 개설, 11만여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책으로 문화예술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음악회, 청소년연극제, 문화예술관람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구하고 있다.

〈표 28〉 문화예술 시범 학교 운영현황(1992~1996년)

구 분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학교수(개교)	150	30	30	30	30	30	
지원금(만원)	45,900	9,000	9,000	9,000	9,000	9,900	
발표회	참가인원(명)	165,143	47,448	35,857	33,187	21,143	27,508
	관람인원(명)	306,819	69,831	66,563	71,743	59,332	39,350

자료: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각년도.

176. 대한민국의 1997년 도서관예산액은 231,470,169천원으로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실) 예산은 각각 5,022,595천원, 565,924천원, 4,777,805천원이다. 특히 정부는 낙후지역 등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주민 밀집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활동공간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다.

〈표 29〉 이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1991~1997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누계	
이 동 도서관	도서관수	8	8	8	8	8	9	9	58
	지원액	160	160	160	160	160	225	225	1,250
소 도서관	도서관수	80	100	100	100	100	-	100	580
	지원액	200	200	200	200	200	-	200	1,200

자료: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각년도.

177.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문화활동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 현재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을 합하여 13,512개이다.

〈표 30〉 전국 문화공간 현황(1997년)

구 분	내 역	관 수	
도 서 관	국립중앙도서관	1	
	공 공 도 서 관	350	
	대 학 도 서 관	378	
	학 교 도 서 관	9,117	
	전문·특수도서관	418	
	국 회 도 서 관	1	
	계	10,265	
박 물 관	등 록 박물관	박물관	77
		미술관	31
		소 계	108
	국 립 박물관	박물관	23
		미술관	1
		소 계	24
	대 학 박물관	박물관	80
		미술관	1
		소 계	81
	계	213	
기 타 문화시설	공 연 시 설	1,012	
	전 시 실	606	
	지역문화복지시설	1,150	
	문화보급전시시설	249	
	계	3,034	
총 계	13,512		

자료: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7.

제9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178.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 있다.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교화에 그 중점을 두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성인범과 다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도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범법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한 처분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한 보호처분 등이 있다.

179. 대한민국의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형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1조는 이에 따라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0.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차 보고서 제166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81. 헌법(제12조 제5항)은 체포·구속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속시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구속이유와 구속일시·장소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67항의 내용과 같다.

182. 변호에 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헌법(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68항의 내용과 같다.

183.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률구조법에 의하면 농어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에 대한 형사피고사건과 소년부송치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형사변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무료변호실적은 1,948건에 이르고 있다.

184. 소년법 제17조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소년

에 대하여 필요하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취지로 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85.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70항의 내용과 같다.

186.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이 선언한 이러한 원칙을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에 관하여는 1차 보고서 제171항의 내용과 같다.

187.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유리한 증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72항 및 17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88.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97조),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164조).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89. 형사피고인은 1심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7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따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한하여는 단심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90. 아동이 재판에서 사용되는 대한민국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무료로 통역이 제공되며, 농어나 맹인의 진술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75항과 같다.

191. 협약에서 사법절차와 관련된 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소년법에서 소년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언론보도에 관하여 당사자인 소년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소년의 신원을 비공개로 하는 등 사생활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76항과 같다.

192.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

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193.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법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 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소년의 감호위탁, 2)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처분, 3)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 4) 병원 요양소 등에 대한 위탁, 5) 소년원 송치처분 등 형사처벌이 아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4. 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범법사실 뿐 아니라 소년의 가정상황과 환경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소년사건을 심리하는 때에도 교육자,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정신과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토록 함으로써 소년이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당해 소년에 대한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선도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1차 보고서 제179항과 같다.

195. 보호소년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소년원을 교과교육·직업훈련·단기 처우·특별소년원으로 분류운영하고 보호소년을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분리수용하여 동료 수용소년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교과교육 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여 학교진학, 복학, 편입학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소년원에서는 직업훈련 기본교육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차정비 등 15개 직종에 걸쳐 연간 700명의 기능사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단기처우 소

년원에서는 보호소년의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조기보호와 적기개선을 목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다양한 심성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간공백없이 일과를 진행하며, 특별소년원에서는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사범을 집중수용하여 신체훈련 중심의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예, 체육, 근로봉사 등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주 10시간 이상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196. 가퇴원자에 대하여는 6~12월간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가퇴원 전에 취업, 결혼, 진학 등을 주선하여 안정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한 퇴원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후지도를 실시하여 직업적 부적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제2항, 3항, 4항)

197.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1차 보고서 제182항 내지 제184항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제201조(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등의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경우에는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

나, 피의자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단기간 유치하는 체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한 후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청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의동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1991년 3월 8일 개정하여 그 요건과 절차 및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동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제도를 신설하였다.

199.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의동행형식의 체포여지를 없애고 체포의 영장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200.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제201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다만,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동법 제206조), 또는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인 때(동법 제211조~제214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법관으로부터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동법 제207조, 제213조의 2) 사후에 충분히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소년법 제55조 제1항), 부득이 구속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 구속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제1항).

20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병원 등 감호시설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동법 제32조제5항),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

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동법 제67조).

204. 소년원법 제8조는 남자와 여자, 16세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한다고 규정하여 비행오염 방지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신입소년은 일반보호소년과 분리수용하고 10일간에 걸쳐 분류조사를 실시하며 보호소년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분류조사결과 밝혀진 사실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내온 분류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분류수용, 처우기간,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205. 전국 12개 소년원을 교과교육·직업훈련·여자·특별·종합소년원으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게 분류수용하며 성별, 연령, 입원회수, 공범유무, 비행의 질, 처우기간, 교육과정 등에 따라 시설을 달리하거나 동일시설에서 구획을 정하여 분리수용한다(소년원법 제4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 제16조).

206.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면회를 허가하며, 회수와 대상에 제한없이 서신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검열하여 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발을 규제한다(소년원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한편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교육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출을 허가하여 가족관계의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다(소년원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207.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제214조 제2항, 구속의 적부 심사)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법률구조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3조 제1호).

208.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소년범죄는 전체범죄의 7.6%를 점유하였으며, 그 중 36.8%가 기소되었고 기소유예 38.1%, 소년부송치 13.8% 등의 순으로 처리되었다. 소년범을 제외한 일반 성인범죄의 경우 기소율은 소년범보다 크게 높은 53.7%인 반면 기소유예율은 7.3%에 불과하여 일반 성인 형사범에 비하여 소년범에 대하여는 선도를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1993~1997년)

(단위: 명,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총 범죄	1,738,952	1,660,973	1,804,405	2,018,296	2,117,759
소년범죄	110,604	108,342	124,244	146,986	164,182
구성비율	6.4	6.5	6.9	7.3	7.6
기 소 율	40.3	37.7	36.8	35.4	36.8

자료: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각년도.

다.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209.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는 본 보고서 제4장 제47항을 참조.

라.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10. 갱생보호활동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성행교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자가 사회환경적 장애로 인하여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비행소년의 갱생보호는 법무부 산하의 한국 갱생보호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공단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가 있으며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호소 등 56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보도협의회 등 갱생보호사업 후원회가 조직되어 취업알선, 의료시혜, 재정지원 등의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 지원, 선행지도, 기타 자립지원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1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아동권익 보호신고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지역신고센터, 호투라기 상담전화 등이 있다. 한국어린이보호회는 현재의 어린이 상담전화를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을 위하여 24시간 가동체제의 Hot-line system으로 확대하고, 1999년 1월부터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다.

212. 한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사회적 조치는 초보적 단계인 발견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동학대신고의 법적 제도화를 위

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학대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예방협회의 사회적인 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담기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213. 취학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이 때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으로는 주식에서 접대하는 업무, 유류·양조업무, 소각장소, 도살업무, 엘리베이터의 운전업무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과 갱내작업(근로기준법 제70조), 용광로작업, 금속압연작업, 발화성물질제조업무 등 유해, 위험직종 등이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214.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에 유인 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4월 직업안정법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직업안정법 제2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직업소개 부조리합동단속,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소개업자를 추적, 고발조치하고 있다.

215. 1997년 4월 현재 15,177명의 18세미만 아동이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 5,064명, 여자 10,113명으로 전체근로자의 0.2%

가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이다. 이들 연소근로자의 78.0%가 제조업(11,836명)에 종사하고 있다.

216.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반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 근로하지 못하는 반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반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소근로자를 특별 보호하고 있다.

217. 연소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65조)에서 친권자·후견인 등은 아동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 최저임금제는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바, 18세 미만 근로자로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도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1998년 5월 현재 일반근로자의 최저시간급은 1,525원, 일급은 12,200원이다.

219. 이러한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2장에 다음과 같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은 18세 미만자의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고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3조 위반), 18세 미만자를 갱내작업에 고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은 15세 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 법정근로시간, 야업금지 및 시간외 근무 위반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7·68·69조 위반)이며, 500만 이하의 벌금처벌은 18세 미만자에게 대한 연소자증명서를 미비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4조 위반), 부당한 근로계약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이다.

220.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특별보호 규정이 준수되도록 전국의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하여 연소자를 특별 보호 조치하고 있다. 1997년도 실적은 779개소를 대상으로 3,330명을 점검하고 207건을 시정·조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최대근로시간 규제가 없어 5인 이하 작업장에서 일하는 적지않은 아동노동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21. 연소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친권자 등은 아동

의 근로계약을 대리할수 없으며 친권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세미만 근로자도 취업기간이 6개월 경과한 이후에는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여, 연소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12장에 각각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특별보호규정의 준수를 위해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가 5인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다.

222.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반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18세미만 근로자는 야업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사이)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223. 1996년 현재 15~19세의 연소자 가운데 총 394천명 (남:여=154천명:241천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3,695천명의 10.7%이다.

나. 마약(협약 제33조)

2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제2항)

225. 이밖에 아동을 마약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관리법은 취급자격 없이 마약을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마약법 제60조제1항제1호), 대마관리법은 대마취급자격 없이 매매 등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226.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17개소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전문병원으로 지정, 마약류 중독자를 무료 치료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병상 규모의 국립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마약사범이 감소하는 반면, 최근에는 본드나 가스 등의 흡입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중독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2년에 행해진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약물 사용자는 45천에서 88천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불분명하다. 약물사용자는 정신과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약물중독이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기관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다.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227. 형법 제24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1차 보고서 제202항~제205항에서 상세

히 설명한 바와 같이,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성적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28.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14-16조)

22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0.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 및 동법 제34조)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231.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제18조)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점 기타 접객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

위,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유희를 시키는 행위,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유형에 따라 10년 내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 김재엽, 『아동윤락』, 1998. (미발간자료)
- 김정렬, 『장애아동』, 1998. (미발간자료)
- 김현룡,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서비스』, 1998. (미발간자료)
- 노혜련,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과 당면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9.
- 문선화, 『소년소녀가장과 청소년비행』, 1998. (미발간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각년도.
- _____, 『청소년 수련시설 편람』, 각년도.
- 배태순, 『입양』, 1998. (미발간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각년도.
- _____, 『업무자료』, 각년도.
- _____, 『19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특성분석』, 1998.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아동복지법 개정 대토론회』 자료, 1998. 9.
- 이배근, 『아동학대』, 1998. (미발간자료)
- 이 옥, 『아동교육과 건전발달』, 1998. (미발간자료)
- 이재연, 『아동안전』, 1998. (미발간자료)
-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

- 구원, 1995.
- 정기원·오미영,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정영순, 『아동유기』, 1998. (미발간자료)
- 조홍식, 『가족지원』, 1998. (미발간자료)
- 최정수 외,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_____, 『1997 사망통계연보』, 1998.
- 표갑수, 『아동보육』, 1998. (미발간자료)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1997. 2.
- _____,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1997. 12.
- _____, 『아동권리지표개발』, 1998. 6.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의 권리와 법』,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1996. 12.
- 허남순, 『위탁양육』, 1998. (미발간자료)
- Hodgkin, R. and P. Newell,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1998.
-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Sweden, 1991. 12.
- Muntarbhorn, Vitit, *A Sourcebook for Reporting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EAPRO and Child Rights ASIANET, 1997.
- Save the Children, *Theme Pack No. 2: Children and Advocacy*, SEAPRO Documentation Series, 1997. 12.

부 록

1. 한국어린이헌장 / 103
2. 새로운 청소년 헌장 / 105
3.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107

부록 1.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고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부록 2.

새로운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부록 3.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

